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입찰 비리 등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및 자수자 특례 신설 》
■ 서범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326호)

2025.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서범수의원 대표발의(제2207326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입찰 비리 등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및 자수자 특례 신설 (안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102조)	2

I. 서범수의원 대표발의(제2207326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서범수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5. 1. 8.

다. 회 부 일 : 2025. 1. 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턴키 등 대형공사 입찰의 경우 업체 선정을 위해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와 업체 간 비리 발생의 여지가 높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입찰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한 건설산업구조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102조).

3. 검토의견

가. 입찰 비리 등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및 자수자 특례 신설 (안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102조)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① ~ ③ (생략)	제38조의2(계약 등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의4(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사건은 제외한다. 1. ~ 5. (생략) <신설> ② ~ ④ (생략) <신설>	제38조의4(불공정행위 및 부정행위의 신고 등) ① ----- --- 불공정행위 및 부정행위----. -----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38조의2에 따른 부정행위에 관한 사항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2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38조의 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가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에 따라 금지되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과 관련하여,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신고포상금’과 ‘자수자 형벌 감경·면제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38조의2¹⁾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를 조 제목으로 하는 규정으로,

제1항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해관계인에게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제2항은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업체 선정 심사위원회에 그 직무에 관하여, 제3항은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업체 선정에 참여한 법인·법인 대표자·상업 사용인·임원 및 직원에게 그 직무에 대하여,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82조의2 및 제95조의2에서 각각 행정처분(영업정지·과징금·등록말소)²⁾과 형사처벌(5년

1)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①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업체선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업체 선정에 참여한 법인, 해당 법인의 대표자, 상업 사용인, 그 밖의 임원 또는 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이하 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³⁾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같은 금지 및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감리 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의 입찰담합 또는 금품수수 혐의로 감리업체 17개사와 임직원 및 심사위원 등 68명이 기소되는 사건⁴⁾이 있었고,

금품수수에 연루된 심사위원들이 2023년 발생한 아파트 건설현장 주차장 붕괴사고로 논란이 되었던 철근 누락단지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제82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정지를 명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처분은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4) “공공 건물 감리입찰 담합 및 금품수수 사건 수사 결과 -입찰담합한 감리업체 17개사, 뇌물수수한 심사위원 18명 등 총 68명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보도자료, 2024.7.30.

-(입찰담합사건) 감리업체들이 '19.10.~'23.2. 공공 발주 감리입찰에서 ‘용역나눠갖기’ 등으로 총94건, 낙찰금액 합계 약 5,740억원 규모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법인 17개사, 개인 19명을 입찰담합으로 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

-(금품수수사건) 교수, 공무원 등 입찰심사위원들이 '20.1.~'22.12. 업체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 심사위원 18명(구속6명), 감리업체 임직원 20명(구속1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으로 기소

-감리업체들은 '19년경 종합심사낙찰제가 시행되자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기술경쟁 없이 안정적인 이익창출을 위해 담합을 하고, 돈으로 높은 점수를 얻어 용역을 낙찰 받았으며, 심사위원들은 이에 편승하여 상당한 금품을 수수하였음.

등 여러 사업의 심사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사업들의 부실 여부 등에 대한 점검과 함께 심사위원 선정 방식 개편 및 심사과정 공개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⁵⁾

이에 따라, 정부에서 아파트 건설현장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발표한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2023.12.)⁶⁾의 세부 추진과제인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현장 감독 강화’는 심사위원 대상 로비 등 입찰 비리 차단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2023.12.)의 기본 방향 】

목표	건설 카르텔 혁파를 통한 건설산업 시스템 정상화		
전략	① 설계-시공-감리 간 상호견제 시스템Check & Balance 구축 ② 안전, 품질 최우선 원칙 확립 및 스마트 건설 혁신 도모		
전략 및 과제	전 략		세부 추진과제
	감리-설계-시공 간 견제·균형 확보	감 리	① 건축주로부터 독립성 확보 ② 감리인증·전문법인 등 전문성 강화
		설 계	③ 구조설계 책임 및 역량 강화 ④ 사업단계별 설계 검증체계 강화

5) 202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4.10.10.), “LH 입찰심사위원, 금품수수 의혹…철근 누락단지도 심사”, The Public, 2024.10.10. 참고

6) “LH 전관·독점 구조 척결, 부실시공 원천 차단한다 -공공주택 LH-민간 경쟁체제 도입…LH 전관은 입찰부터 원천차단 -감리·설계·시공 간 상호견제 체계 구축…안전·품질 중심의 건설산업 시스템 개편”,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12.11.

			⑤ 무량판 구조 부실시공 재발 방지
		시 공	⑥ 주요공정 의무점검 제도 도입 ⑦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후속조치 추진 ⑧ 건설현장 자재·인력 관리 강화
	안전·품질 중심 시스템 개편		① 적정 공기·대가 등 발주 환경 개선 ② 안전·품질 정보 공개 및 활용 ③ 부실에 대한 경제적 비용 확대 ④ 정부·지자체의 현장 감독 강화 ·정부-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감독 강화 ·영상기록체계 구축 ·신고포상금 강화
	K-건설 혁신으로 산업경쟁력 제고		① 모듈화를 통한 생산방식 전환 ② 건설현장 자동화 기반 강화 ③ 건설산업 디지털화 촉진

※자료: 국토교통부

개정안은 입찰 비리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입법에 반영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행법 제38조의2의 조 제목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에서 ‘계약 등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로 변경하고(안 제38조의2
조 제목), 동 부정행위를 현행법 제38조의47)에 따른 신고 및 신고포상금

7)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사건은 제외한다.

1. 제22조제5항에 따른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불공정한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 제29조에 따른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위반에 관한 사항
3. 제3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등에 관한 의무의 위반에 관한 사항

지급 대상에 추가하며(안 제38조의4 조 제목 및 제1항제6호 신설), 제38조의2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도 자수를 한 경우에는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⁸⁾

4. 제38조에 따른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설산업의 불공정한 거래질서와 관련된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 자수자 특례에 대한 유사 입법례로는, 「공직선거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262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제230조제1항·제2항, 제231조제1항 및 제257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중 금전·물품,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후보자나 그 가족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제2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2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 ② 제1항에 규정된 자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소속 전·현직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129조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 협조한 자
-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재판에서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달리 진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 협조한 자의 신원·제보 내용 등 자진신고나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과 제4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신고관청은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③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하도록 하여(안 제102조 신설),

계약 등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적극적 신고와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업체 선정 등에 있어 부정 청탁, 금품수수 등 비리의 적발과 예방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입찰 계약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근절과 공정한 발주환경 조성을 위해 신고 및 신고포상금과 자수자 특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91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자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또는 신고등으로 인한 징계나 불리한 행정 처분과 관련된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